

73

# 1인가구와 고용위기지역

## 지역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 정책방향성

김경태 부연구위원

[kkt@makehope.org](mailto:kkt@makehope.org)

No. 73

2023. 07. 12.

희망이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희망이슈**

모든 시민이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소셜디자이너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요약 1인가구와 고용위기지역

- 1인가구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구형태로서 주류로 자리잡음. '1인가구의 주류화'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인가구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그 형성과정에서 정서·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욕구기반 지원이 필요함
- 고용위기지역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1인가구 발생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결과는 단기간·분절적 지원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음
- 특히 비자발적 1인가구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한부모가정은 1인가구 못지않은 지원대상임에도 단순 1인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인가구 정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용위기지역의 1인가구 형성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첫째, 1인가구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



책 수립이 필요함, 둘째, 종합적인 1인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대상인 1인가구의 범주를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함, 셋째, 지역특성이 반영된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함

# I.

## 들어가는 말

### 가. 연구 배경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반세기 동안 물질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했다. 이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가치관과 가족의 기능·역할 및 구조를 축소시킴으로서 가족의 구조·기능 및 관계적 측면의 급속한 변화를 불러왔다.(김승권, 2002).

현재 가족모습은 전통적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 조부모, 부부, 자녀가 한집에 살던 전통적 가족의 모습과 달리 소형화, 핵가족화 되었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가구의 보편화된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2021년 전체가구 중 33.4%가 1인가구이니 마주치는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인 셈이다. 더불어 결혼적령기 지연, 평균 수명 연장 등 인구·사회문화·경제적 이 유가 우리사회 1인가구화 촉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도시와 농어촌 간 기본 인프라, 인적구성 및 사회적 특성을 달리 하기에 전개 양상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나 1인가구 증가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 공통된 현상이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동' 거주 1인가구 비율은 33.1%, '읍·면' 거주 1인가구 비율은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소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제 1인가구는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일반화된 가족구성의 형태로 부상하였다. 1인가구가 일반화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도 아니다. 2018년 EU 주요국의 1인가구 구성비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30%를 넘어섰다. 특히 북유럽 국가의 1인가구 비율이 높았는데 그 중 스웨덴은 전체가구의 55% 이상이 1인가구로 집계되었다(2019, 김형균).

1인가구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 소득이 중단되면 빈곤으로 추락할 수 있고 건강이 악화되면 소득단절은 물론 일상 전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독사는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나 사적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해체된 가구의 사각지대로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행정과 제도 등 공적 지원이 반드시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김형태(2023)는 고독사를 경제적·심리적·사회관계망 고립을 겪으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고독사와 더불어 사회로부터 배제된 은둔·고립 청년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비교적 관심 밖에 머물러 있던 40-50대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서도 경제적·정서심리적 결핍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희석과 그 결과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가구 형태인 1인가구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한 복합적 결핍이라는 화두를 우리사회에 던지고 있다.

또한 1인가구는 발생과 형성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외에도 외부충격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이전 2018년 혼인건수는 257,622건 이었으나 2021년에는 192,507건으로 25.3% 하락하였고 동기간 조혼율은 5.0%에서 3.8%로 급감했다. 절대인구의 감소에 따른 혼인의 감소와 외부충격에 의해 혼인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셈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은 보다 집중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같은 경제적 취약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가족해체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인구학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를 예상해, 2020년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2020.관계부처합동). 각 지자체에서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나. 연구 방법 및 목적

1인가구 일반현황과 지원정책, 고용위기지역 지원정책과 한부모가정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지역의 1인가구 특성과 인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해체 위기를 경험하는 가구를 위한 1인가구 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남기고자 한다.

# II.

## 1인가구와 고용위기지역

### 가. 1인 가구

#### 1) 1인가구 일반현황

2021년 통계청 가구부문 자료에 의하면 세대원별 가구의 구성비는 1인가구 33.4%, 2인가구 28.3%, 3인가구 19.4%로서 보편화된 가구형태는 1인가구이다. 1인가구가 주류로 등장한 것은 2015년 이후부터이다. 2015년 가구부문 비중이 27.2%를 차지하면서 가장 일반적인 가구형태를 점유하였다. 가구부문 중 2018년 대비 2021년 증가한 형태는 1인 및 2인가구가 유일하다. 3인 이상의 가구들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편, 1인가구는 2018년 대비 4.1% 증가하여 1.1% 증가에 그친 2인가구와 대비된다.

[표 1] 지역별 가구 세대원 비율: 2018년 대비 2021년

지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	합계(천가구)
전국	33.4 (▲4.1)	28.3 (▲1.1)	19.4 (▽1.6)	...	21,448
서울시	36.8 (▲4.8)	26.1 (▲0.6)	19.3 (▽1.8)	...	4,046
부산시	34.0 (▲4.4)	29.6 (▲1.0)	19.4 (▽1.9)	...	1,431
대구시	32.7 (▲4.5)	28.3 (▲1.1)	20.1 (▽1.7)	...	1,000
인천시	30.0 (▲4.8)	28.1 (▲1.4)	21.3 (▽1.8)	...	1,183
광주시	34.5 (▲4.3)	27.2 (▲1.2)	18.6 (▽1.6)	...	615
대전시	37.6 (▲5.2)	26.6 (▲1.1)	18.0 (▽2.1)	...	640
울산시	29.5 (▲3.9)	28.3 (▲1.8)	21.7 (▽1.9)	...	451



지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	합계(천가구)
세종시	31.5 (▲1.4)	24.3 (▲0.8)	20.2 (▽0.5)	...	145
경기도	29.2 (▲4.0)	26.9 (▲1.4)	21.4 (▽1.4)	...	5,290
강원도	36.3 (▲3.5)	31.6 (▲0.9)	17.2 (▽1.6)	...	674
충청북도	36.3 (▲4.4)	29.8 (▲1.2)	17.4 (▽1.8)	...	695
충청남도	35.8 (▲4.0)	30.0 (▲0.9)	17.3 (▽1.5)	...	915
전라북도	35.7 (▲4.0)	31.0 (▲1.0)	17.0 (▽1.6)	...	772
전라남도	35.3 (▲3.4)	33.2 (▲0.6)	16.6 (▽1.3)	...	777
경상북도	36.0 (▲3.7)	32.3 (▲1.2)	17.2 (▽1.8)	...	1,156
경상남도	32.7 (▲3.6)	29.9 (▲1.4)	19.3 (▽1.5)	...	1,378
제주도	32.7 (▲3.3)	28.4 (▲1.1)	18.5 (▽0.9)	...	271

출처 : 국가통계포털

앞서 살펴본대로, 1인가구는 전국적으로 그 비율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1인가구의 심층적 분포 현황을 더 알아보고자 1인가구의 지역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별 비중은 1인가구의 상대적인 증가양상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2021년 총 가구는 2018년 대비 약 146만 가구가 증가하였고 이 중 1인가구는 약 132만 가구가 증가하여 716만 가구를 기록하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 대구시 등 광역시는 인천시를 제외하고 전국 1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또는 유지되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상대적인 비중 증가를 제외하고 타 도에서도 전국 1인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또는 유지되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대비 2021년 1.1% 증가하였고 반대로 비수도권의 비중은 1.1% 감소하였다. 수도권으로 1인가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복합적인 이유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 풍부한 인프라로 인해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의 발생 및 유입을 유인하였고 문화 및 인구, 가족관계 등에 의해 노년 및 일반적인 1인가구가 형성되었으리라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1인가구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일수록, 기존 인구규모가 클수록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추하면 지역 내 경제상황, 인구구조에 따라 1인가구의 지역별 특수성이 발생할 수 있다.

[표 2] 세대원별 지역 비율: 2018년 대비 2021년

지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	합계
전국(천가구)	7,165 (▲1,317)	6,076 (▲630)	4,169 (▽33)	...	21,448 (▲1,469)
서울시	20.8 (▽0.2)	17.4 (▽0.6)	18.7 (▽0.5)	...	18.9 (▽0.4)
부산시	6.8 (▽0.1)	7.0 (▽0.2)	6.7 (▽0.3)	...	6.7 (▽0.2)
대구시	4.6 (▽0.1)	4.7 (▽0.1)	4.8 (▽0.1)	...	4.7 (▽0.1)
인천시	5.0 (▲0.2)	5.5 (▲0.1)	6.0(-)	...	5.5(-)
광주시	3.0(-)	2.8(-)	2.7(-)	...	2.9(-)
대전시	3.4(-)	2.8(-)	2.8 (▽0.1)	...	3.0(-)
울산시	1.9(-)	2.1(-)	2.3 (▽0.1)	...	2.1 (▽0.1)
세종시	0.6(-)	0.6 (▲0.1)	0.7 (▲0.1)	...	0.7 (▲0.1)
경기도	21.5 (▲1.1)	23.4 (▲1.1)	27.2 (▲1.4)	...	24.7 (▲0.9)
강원도	3.4 (▽0.1)	3.5(-)	2.8(-)	...	3.1(-)
충청북도	3.5(-)	3.4(-)	2.9(-)	...	3.2(-)
충청남도	4.6 (▽0.1)	4.5(-)	3.8(-)	...	4.3(-)
전라북도	3.9 (▽0.1)	3.9 (▽0.1)	3.2 (▽0.1)		3.6 (▽0.1)
전라남도	3.8 (▽0.2)	4.2(▽0.2)	3.1(-)		3.6 (▽0.1)
경상북도	5.8 (▽0.2)	6.1 (▽0.1)	4.8 (▽0.2)	...	5.4 (▽0.1)
경상남도	6.3(▽0.2)	6.7(-)	6.4 (▽0.1)	...	6.4 (▽0.1)
제주도	1.2(-)	1.3(-)	1.2(-)	...	1.3(-)

출처 : 국가통계포털

## 2) 1인가구 정책

2020년 중앙정부는 정부합동으로 '1인가구 증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2015년 이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편 기존 다인가구 지원정책으로는 1인가구 욕구와 수요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

적 대응과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개선을 위해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기반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의 1인가구 지원정책 방향은 1인가구의 취약부문 뿐만 아니라 취약 가능성이 있는 부문까지도 포괄하여 지원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 관계망 확대 지원사업은 1인가구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포함하여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특히 1인가구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고립과 외로움, 우울감 등 정서·심리적 부문에 대해서는 돌봄 등을 통해 대응·지원하고자 한다.

[표 3]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분야	정책과제
소득·돌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 (5개→2개) ·24시간 돌봄서비스 추진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강화
주거	·청년 및 고령층 맞춤형 지원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후 가구수요에 맞게 공급 ·별도 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검토
안전	·사전 예방체계 확충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방체계 고도화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집중관제, 신상정보 공유 등 밀착 관리 ·즉각 대응시스템 구축 - 신속·민감 대응시스템 전국 확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
사회적관계망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확대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소비	·간편식품산업 - 시장 활성화 기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지원 확대 ·외식업 - 1인가구 메뉴개발 등 컨설팅 지원 ·생활소비재·스마트홈 산업 - 디자인 등 맞춤형 상품 개발 유도 ·온라인 판매 산업 - 중소·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 강화 ·로봇 산업 - 돌봄로봇 등 관련 상품 공급 활성화

자료: 2020 정부합동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민선7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제8235호)'에 따르면 1인가구 삶의 질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 생활 편의와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은 2019년 제1차로 수립되었으며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 비전을 앞세워 △다양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활기찬 일상유지,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 인식 확산 등 3대 추진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 4대 안심정책을 발표하였다. △건강안심(건강, 돌봄, 안심먹거리), △범죄안심(마을안심, 내집안전), △고립안심(고독·고립탈출, 사회관계자립), △주거안심(맞춤주택공급, 주거불편해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경제적 취약점에 대응한 종합지원 시책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서 1인가구 생활 상의 문제, 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한 갈등과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일반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 특화프로그램으로서 1:1 심층 심리상담과 같은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정책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의 취약 부분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계획·수립되었다는 점이다. **1인가구가 마주한 위험은** 경제적 위기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심리적 고립 등 복합적 위기를 함께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인가구 정책의 공통된 모습은 전인격적 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양상을 띤다.

## 나. 고용위기지역

### 1) 고용위기지역 개요 및 현황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통해 지역 내 고용하락에 대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법 제32조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고용심의회의와 자치단체의 **신청을 거쳐**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정기준은 1~3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유형의 경우 고용보험 증감률,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수,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를 토대로 일정기준 이하로 악화될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2~3유형은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고용보험의 지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를 통해 검토된다. 결과적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위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종합취업지원대책의 실업자 심리상담의 경우, 그 대상을 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표 4] 고용위기지역의 지원내용 (예시)

분류	지원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연장급여 지급 가능 (60일)
지역고용 촉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종합취업지원대책	·실업자 심리상담,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및 전직·창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취업지원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요청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금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09년 △경기도 평택시를 시작으로 2013년 △경남 통영시, 2018년 △전북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8곳이 지정되었고 2023년 △경남 거제시가 다시 지정되었다. 2018년에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은 최초 1년 지정된 이후 1년씩 4회 연장되어 2022.12.31. 해제되었다. 결과적으로 2018년 고용위기지역은 총 5년간 지정을 유지한 셈이다. 다만 경남 거제시는 2023년에도 지정되어 현재진행형이다.

## 2) 고용위기지역 고용 및 1인가구 현황

고용위기지역으로 살펴볼 지역은 2018년에 지정된 8곳이다. 이 지역의 경우 최초 지정된 이후 4년간 연장되어 총 5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고용수치 및 산업구조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제시의 경우 5년 이상의 심대한 사회경제적 타격이 누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지표는 전국과 비교할 때 등락의 폭이 크고 변동이 심하다. 가장 낙폭이 큰 경남 거제시는 2015년 상반기에 비해 2021년

하반기 7.3% 하락한 59.8%를 기록하였다. 고용률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개인 및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단순노무 직종은 임금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2015년 이후 고용위기지역 평균소득은 일시적인 하락과 중장기적인 취업불안 및 소득불안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5] 고용위기지역의 취업자 및 고용률

지역	2015년		2018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국	60.6	61.2	60.9	61.2	60.4	61.4
울산시 동구*					53.7	54.6
전북 군산시	55.2	55.3	53.1	53.1	55.4	56.1
전남 목포시	56.1	57.6	55.3	54.9	56.3	57.1
전남 영암군	67.1	66.9	63.3	63.0	68.7	69.7
경남 통영시	60.7	58.5	51.3	56.8	55.8	56.8
경남 거제시	67.1	65.3	58.6	59.1	57.7	59.8
경남 창원시**	58.2	57.6	59.1	59.7	59.2	58.6
경남 고성군	71.8	65.7	65.1	65.0	66.1	67.7

출처 : 국가통계포털

\*울산시 동구의 2015, 2018년 자료가 없어 2021년 자료만 제시함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자료가 없어 창원시로 대체함

고용위기지역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평균이 2015년 27.2%에서 2021년 33.4%로 6.2%p 증가하였다. 고용위기지역도 전국 양상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경남 거제시는 2018년 1인가구 비율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울산 동구는 2015년 대비 2018년 비율 자체는 소폭 상승(0.2%)했지만, 1인가구의 숫자 자체는 감소했다. 전개 양상은 비슷하더라도 각 지역별 1인가구 비율은 상이하다.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영암군은 2021년 기준 40.4%에 이른다. 반면 울산 동구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29.8%이다. 고용위기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이 비율 상 차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다음 단락에서 연령별 인구구조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중요한 점은 1인가구 비율상의 차이, 나아가

인구구조상 차이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추세는 전국양상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표 6] 고용위기지역의 1인가구 현황

지역	2015년	2018년	2021년
전국	5,203,440 (27.2%)	5,848,594 (29.3%)	7,165,788 (33.4%)
울산시 동구	16,262 (25.6%)	15,946 (25.8%)	18,500 (29.8%)
전북 군산시	31,080 (29.3%)	33,802 (31.1%)	40,199 (35.2%)
전남 목포시	26,791 (28.9%)	28,628 (30.8%)	33,941 (35.6%)
전남 영암군	7,905 (33.9%)	8,287 (36.4%)	9,697 (40.4%)
경남 통영시	14,970 (28.1%)	16,161 (30.3%)	18,534 (34.3%)
경남 거제시	26,138 (27.8%)	25,937 (27.7%)	29,825 (30.7%)
경남 창원시 진해구	17,667 (26.2%)	19,964 (27.3%)	24,846 (31.5%)
경남 고성군	7,538 (33.9%)	7,828 (35.3%)	8,433 (37.9%)

출처 : 국가통계포털

연령대별 1인가구 분포는 <표 7>과 같다. 전국적으로 연령에 따른 U자형 곡선형태를 띤다. 20대(19.8%)가 가장 많은 반면 40대(13.3%)는 가장 적다.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20-30대, 60대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였다. 교육·일자리 등 사회진출과 사별·수명연장 등 혼인과 인구학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40-50대의 1인가구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 고용위기지역에서의 1인가구 연령분포는 전국평균과 그 구조가 상이하다.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는 역U자형 1인가구 연령분포를 보인다. 역U자형은 40-50대의 1인가구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30-40대에 가족을 구성하여 1인가구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의 40-50대는 가족해체가 발생했거나 가족구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전북 군산, △전남 목포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U자형태와 유사하지만 30대에서 1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40대에 1인가구 비율이 적어져야 U자형이 되지만 40대의 1인가구가 오히려 증가한 지



역이다. 앞서 검토한 지역과 비슷한 가족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고령화된 또는 노후된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경남 통영, △경남 고성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연령에 따라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효과로 보여진다. 청년층에서 1인가구 비율은 낮다는 점은 청년의 유입이 적거나 기존 가구에서 분리·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만약 청년의 유입이 적으면 가족구성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가구를 형성할 유인을 증가시킨다. 청년이 유입할 유인 동기를 낮게 만드는 요인에는 경제적 요소가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전남 영암은 복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역U자형과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60대의 1인가구 비율이 낮다. 그리고 노령의 1인가구 비율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영암군에서 눈여겨 볼 점은 1인가구 분포가 안정적이지 않고 낙폭이 크다는 점, 그리고 50대의 1인가구 **비율이전국보다** 높다는 점이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독립, 또는 1인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적 이질성 또는 경제적 자산을 기초로 다른 집단형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지역의 심층적 분석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점은 가족부문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고용위기지역의 1인가구 인구구조로부터 해당지역의 취약분문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가족구성에 더디고 가족해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마주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 고용위기지역의 1인가구 연령비율 (2018년 대비 2021년 현황)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국	19.8(▲1.3)	17.1(▲0.1)	13.3(▽1.5)	15.4(▽1.3)	16.4(▲1.5)	18.1(▽0.2)
울산시 동구	13.0(▽0.3)	18.3(▽4.0)	18.1(▽0.7)	17.7(▽1.6)	19.4(▲4.3)	13.5(▲2.3)

지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북 군산시	17.3(▲1.2)	12.2(▽0.9)	13.6(▽1.7)	16.9(▽0.8)	18.2(▲1.5)	21.7(▲0.7)
전남 목포시	14.3(▲1.6)	12.2(▽2.0)	14.5(▽1.2)	18.3(▽1.0)	19.3(▲2.1)	21.3(▲0.5)
전남 영암군	11.8(▲2.1)	8.7(▽1.3)	12.8(▽0.5)	18.2(▲1.3)	16.3(▲1.6)	32.2(▽3.2)
경남 통영시	8.1(▲0.1)	10.0(▽1.3)	13.5(▽1.6)	20.7(▽1.2)	23.2(▲2.9)	24.4(▲1.1)
경남 거제시	9.6(▽0.4)	17.3(▽5.4)	21.7(▽0.8)	21.4(▲1.5)	16.6(▲3.9)	13.4(▲1.1)
창원시 진해구	12.7(▲2.0)	16.6(▽2.9)	17.3(▽0.3)	17.7(▽0.5)	18.0(▲1.4)	17.6(▲0.3)
경남 고성군	4.2(▲0.4)	5.5(▽0.8)	7.8(▽1.5)	17.0(▽0.9)	24.1(▲3.1)	41.4(▽0.4)

출처 : 국가통계포털

2021년 1인가구의 전체 성별비율은 50:50이었다. 전국적인 특성은 30~50대의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보다 많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많으며 20대에는 유사한 성별비를 갖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의 1인가구 성별 비율은 전국 비율과 유사한 지역도 있지만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다.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 △창원 진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남 고성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공통적으로 20~40대까지 전국 평균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다. 특히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남성의 경우 △창원 진해(15.9%)가 많았고, 30대 남성에서는 △울산 동구(14.0%), △전남 영암(11.9%), △경남 거제(11.6%)의 순서로 남성 비율이 높았다. 40대에서는 △울산 동구(13.1%), △전남 영암(14.9%), △경남 거제(12.9%), △경남 진해(10.2%)에서 남성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문제는 30~40대 1인가구의 남성비율이 전국평균 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거나 이루었다가 이혼 또는 별거, 경제적 사정에 의해 단독으로 살고 있음을 추정케한다. 결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가능성, 또는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 다른 가족들이 함께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혼 등 혼인해소에 따라 남성 1인가구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우 1인가구로 집계되지 아니하고 한부모 가정 등으로 집계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8] 1인가구의 연령대별 성별비율 (2021년) : 고용위기지역 중심으로

구분		전국	동구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통영시	거제시	진해구	고성시
전체	남	50.0	58.5	51.8	49.5	51.4	48.3	60.5	56.4	44.1
	여	50.0	41.5	48.2	50.5	48.6	51.7	39.5	43.6	55.9
20대	남	51.1	56.8	58.1	56.1	54.2	53.3	58.8	67.0	57.7
	여	48.9	43.2	41.9	43.9	45.8	46.7	41.2	33.0	41.2
30대	남	63.8	77.8	69.2	65.1	75.7	66.3	75.4	72.8	71.6
	여	36.2	22.2	30.8	34.9	24.3	33.7	24.6	27.2	28.4
40대	남	63.5	76.6	67.3	66.6	78.4	67.5	76.4	73.7	72.2
	여	36.5	23.4	32.7	33.4	21.6	32.5	23.6	26.3	27.8
50대	남	57.9	62.4	59.6	55.5	69.4	57.3	63.9	61.6	62.1
	여	42.1	37.6	40.4	44.5	30.6	42.7	36.1	38.4	37.9
60대	남	44.3	43.3	47.3	44.0	55.6	45.3	49.3	43.5	51.3
	여	55.7	56.7	52.7	56.0	44.4	54.7	50.7	56.5	48.7
70대 이상	남	24.4	26.5	24.8	24.2	20.8	23.8	25.1	24.2	22.2
	여	75.6	73.5	75.2	75.8	79.2	76.2	74.9	75.8	77.5

출처 : 국가통계포털

1인가구 지원조례는 서울특별시(제6159호, 2016.03.24)를 시작으로 137개 자치단체가 제정하였다. 고용위기지역에서의 1인가구 지원조례를 직접적으로 제정한 곳은 △울산시 동구가 유일하고 나머지 지역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해야 한다. 1인가구 지원정책은 지역내 1인가구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수의 고용위기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표 9] 혼인·이혼 현황 : 고용위기지역 중심으로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번호
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1055호
전북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5162호
전남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5071호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번호
경상남도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4701호
경남 창원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18호
경남 창원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643호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III.

## 1인가구 발생요인으로서 이혼

### 가. 이혼의 의의

#### 1) 이혼의 개념과 원인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혼인해소의 원인에는 부부 일방의 사망, 실종, 이혼이 있는데 사망과 실종은 자연적인 혼인의 소멸 원인인 것에 비해, 이혼은 인위적인 혼인의 법정소멸 특징을 갖는다(엄영진, 1998). 법률상 이혼은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정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김미숙(2005)은 이혼의 요인으로서 1)사회구조적 변화, 2)인구 사회경제적 요인, 3)이혼에 이르는 주관적 사유를 지목하였다. 첫째 사회구조적 변화는 산업화, 도시화, 교육 수준의 상승, 개인주의의 확대 등을 동반하는 근대화 과정으로 이혼의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이다. 둘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은 교육·직업·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인의 경제활동참여 여부, 초혼연령, 혼전 임신 및 출산 여부, 결혼 기간, 자녀 유무, 인종, 종교 등이 이혼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이혼발생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이르는 주관적 사유란 혼외 성관계, 부부간 의사소통의 양과 질, 부부간 결혼의 만족도, 부부간 성격 및 가치관의 불일치 정도 등 부부 및 이들을 둘러싼 삼자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이혼을 설명한다.

#### 2) 이혼의 영향

이혼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역할수행 문제, 2)심리·정서적 문제, 3)경제적 문제, 4)대인관계 문제, 5)행동·사회적

문제, 6)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7)심신 건강의 문제가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심리·정서적 문제이다. 이혼 당사자 대부분은 이혼 이후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우울과 분노, 가족과 역할의 상실, 자녀에 대한 죄의식을 경험하게 된다(Glick et al., 1999). 즉 이혼 당사자는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정서적 우울감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 3) 1인가구 발생요인으로서의 이혼

이여봉(2017)은 1인가구 증가요인으로서 가치관의 변화와 상황적 강제를 주요 발생원으로 분석하였다. 가치관의 변화는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시간과 여유를 중시하는 인식의 변화를 뜻하며 상황적 강제는 교육, 직장, 이혼 또는 별거, 평균수명 및 기대수명의 연장과 같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1인가구 발생요인을 말한다.

## 나. 혼인·이혼 현황

### 1) 혼인·이혼 일반현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고 혼인시기는 점점 지연되고 있다. 연령별 혼인율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40.3건, 4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4세, 여자는 0.2세 상승하였다. 연령별 혼인건수에서 남녀 모두 20대 후반에서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혼건수는 9만 3천건으로 전년대비 8.3% 감소하였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4년이하 18.6%, 5~9년이하 18.0%, 30년 이상이 16.8% 순으로 많았다. 다만 3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을 제외하면 혼인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이혼 구성비가 높았다.

[표 10] 이혼지속기간별 구성비

혼인지속기간	2015년	2018년	2021년	2022년
합계	109,153 (100.%)	108,684 (100.0%)	101,673 (100.0%)	93,232 (100.0%)
0-4년	24,666 (22.6%)	23,209 (21.4%)	19,116 (18.8%)	17,339 (18.6%)
5-9년	20,796 (19.1%)	20,063 (18.5%)	17,340 (17.1%)	16,738 (18.0%)
10-14년	14,860 (13.6%)	15,540 (14.3%)	14,550 (14.3%)	13,786 (14.8%)
15-19년	16,205 (14.8%)	13,545 (12.5%)	11,280 (11.1%)	11,158 (12.0%)
20년	32,626 (29.9%)	36,327 (33.4%)	39,387 (38.7%)	34,211 (36.7%)
20-24년	13,380 (12.3%)	13,089 (12.0%)	11,959 (11.8%)	10,285 (11.0%)
25-29년	8,815 (8.1%)	9,658 (8.9%)	9,559 (9.4%)	8,275 (8.9%)
30년 이상	10,431 (9.6%)	13,580 (12.5%)	17,869 (17.6%)	15,651 (16.8%)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혼인·이혼 통계"

## 2) 고용위기지역의 혼인·이혼 현황

고용위기지역은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심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혼인의 경우 전국 평균 보다 고용위기지역 대다수가 더 큰 폭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절대 이혼건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부 고용위기지역에서는 증가(2018년 증가지역:△울산 동구, △전남 영암, △경남 통영, △경남 거제, 2021년 증가지역:△창원 진해)하여 전국과 비교할 때 더 많은 가족들이 해체과정을 겪거나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혼인·이혼 현황 : 고용위기지역 중심으로

지역	혼인			이혼		
	2015년	2018년	2021년	2015년	2018년	2021년
전국(건, %)	302,828	257,622 (▽14.9)	192,507 (▽25.3)	109,153	108,684 (▽0.4)	101,673 (▽6.5)
울산시 동구	1,451	882(▽39.2)	531(▽39.8)	374	433(▲15.8)	361(▽16.6)
전북 군산시	1,606	1,140(▽29.0)	830(▽27.2)	688	659(▽4.2)	635(▽3.6)
전남 목포시	1,285	884(▽31.2)	725(▽18.0)	590	565(▽4.2)	527(▽6.7)
전남 영암군	289	190(▽34.3)	182(▽4.2)	139	167(▲20.1)	150(▽10.2)

지역	혼인			이혼		
	2015년	2018년	2021년	2015년	2018년	2021년
경남 통영시	802	546(▽31.9)	341(▽37.5)	386	431(▲11.7)	369(▽14.4)
경남 거제시	2,281	1,285(▽43.7)	760(▽40.9)	667	756(▲13.3)	637(▽15.7)
창원시 진해구	1,244	980(▽21.2)	711(▽27.4)	436	436(-)	471(▲8.0)
경남 고성군	254	162(▽36.2)	97(▽40.1)	152	117(▽23.0)	99(▽15.4)

출처 : 국가통계포털

## 다. 가족해체 위기에 따른 이혼가족 지원정책

이혼가족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정책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급요건은 가구원 수에 따른 일정소득요건이며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는 아동 수에 따라 추가로 지원금이 더해지는 구조이다.

[표 12]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정책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만원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 전후 상담을 통해 이혼을 숙려하고 이혼 중 또는 이후 발생한 어려움 대처방안과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 라. 소결

고용위기지역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고용불안 및 소득의 감소를 겪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있다. 해당 지역은 1인가구 현황으로 유추해 본 결과 가족해체 측면이 강하고 그로 인한 40-50대의 취약성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해체될 때 발생하는 한부모 가정도 발생한다.

문제는 고용위기지역의 위험과 결핍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분야가 전문화·파편화·집중화 되어 있다는 데 있다. 고용위주의 실업극복방안, 경제적 지원금으로 지출되는 한부모가정 지원방안은 목표집단의 결핍부문 중 경제적 부문만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정서심리적 결핍, 그리고 그 충격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 또한 그 여파로 발생하는 가족해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잔여적·부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1인가구 지원정책의 포괄성, 종합대책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1인가구 지원정책은 1인가구로서 취약한 일자리·주거·건강·돌봄·관계·안전·정서심리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연령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1인가구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비교적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용위기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그로부터 파생한 인구학적·문화적·심리정서적 위험에 대응·해소하기가 위해서는 지역특성 및 지역육구, 인구구조에 기반한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1인가구 **형성원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누구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1인가구가 될 수 있다. 외부환경으로 인해 강제로 형성된 1인가구는 준비된 사항이 없다. 그 결과 고스란히 1인가구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된다. 1인가구 **형성원인**에 따라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1인가구 정책대상의 폭을 넓히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가 혼인 해소와 같은 이혼의 방법으로 형성된 경우, 배우자는 또 다른 1인가구가 될 수 있지만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가구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녀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배우자는 자녀로 인하여 1인가구 정책대상에서 배제될 것이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1인가구 지원정책은 한부모가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만약 부처간 중복지원이 문제라면, 고용위기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에 나선다거나, 지원체계 간 협력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대해 1인가구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특성이 반영된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인구구조, 성비에 따라 다양한 1인가구 분포형태를 갖고 있다. 청년 중심의 **1인가구가** 필요한 곳이 있는 반면 중장년, 노년 1인가구가 중점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 이를 통해 욕구와 결핍을 제대로 반영한 지역별 1인가구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여건과 산업구조가 반영된 1인가구 지원정책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1인가구 시대는 이미 **경제선을 넘어** 우리 사회 일반적인 주류로 자리 잡았다. 1인가구는 홀로 살아간다는 고립감·외로움 등으로 정서·심리적으로 위축된 경우가 많다. 1인가구 지원정책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이 때문에 주거, 경제, 돌봄, 건강, 심리, 안전 등과 같은 1인가구가 **처해질** 위험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 IV.

## 마치며

고용위기지역에서의 시민들이 겪을 경제적 충격과 그 여파는 가족의 해체 뿐만 아니라 가족형성의 지연, 어쩌면 가족 구성을 포기하게 했을 수도 있다. 이들 지역의 시민이 경험한 경제적 위기는 일시적이지도 않아 최소 5여년간의 기간을 인내하였다. 그 기간동안 발생한 정서·심리적 위축, 우울감 등은 경기가 좋아지고 안정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지원과 주변 이웃의 관심이 있을 때 비로서 치유되고 미래를 위한 한걸음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1인가구에 주목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에서의 1인가구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이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회, 이를 위해선 공적 부분의 정확한 지원과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단행본

엄영진. 1998. 「사례중심 가족법」. 서울: 대왕사.

#### 논문

김형균, 2019.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겨울호 Vol.11:5-15

이여봉, 2017.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2, 66

관계부처합동, 2020.06.25.,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2022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 연구보고서

김미숙, 원영희, 이현송, 장혜경, 2005. "한국의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91-105.

### 외국문헌

Glick, I. D., Berman, E. M., & Clarkin, J. 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th Eds.), 1999.

#### 관련 기사

김형태, 2023. "[새로 나온 책] 가족·돈·희망이 없어요...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외", KBS NEWS(03/06).

#### 인터넷 문서

법체제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index.d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건강가정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web/index.do>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를 감싸아를랑하라  
The Young Foundation 2차원의 재발견  
정정 ANIS 은강문제총서  
기술 | 시대를  
social | 정신을  
innovation | 다룬다  
리얼친단지성포럼젝트  
아시아 사회혁신 사회혁신포럼  
어워드

HOPE SENIOR AWARDS  
호혜와연대  
아름다운 시니어  
사회적  
·기금  
어려이 함께 시민사랑  
두번째 인생실거  
social innovation

HOPE SENIOR AWARDS  
호혜와연대  
좋은 일  
공정한 노동  
good fund raiser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 사회적 | 저이저씨,  
매니페스토 | 기업가 | 이상해요.

재난안전연구  
휴먼라이브러리  
문화예술교육 희망실사대  
강남ICT 강산에  
희망자리  
민들기  
NGO  
프로젝트  
귀농귀촌 아카데미  
노람테이블  
좋은 서울만들기 대학생·공공디자인포럼

사회적기업인포럼 도시재생  
마을이 학교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항인포럼  
0416  
HOPE  
신문화공간조성사업

희망조합  
시민의  
사회  
시민주의  
시민주의  
시민의  
@서울  
공공  
경제  
기금

지혜로운학교 좋은 일에도 경연이 필요하다  
Think & Do Tank  
Think & Do Tank  
Think & Do Tank

천개의 직업  
거버넌스  
좋은  
시각  
학교  
국민  
학교  
국민  
학교

Together

▶ 후원회원 신청

02-6395-1415  
give@makehope.org

▶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는

-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매크Think & Do Tank 입니다.
-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 www.makehope.org
- facebook @ hopeinstitute
- 02-3210-0909

# ISSUE THE \* PEOPLE ISSUE ISSUE

희망이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No. 73  
2023. 07. 12.